

발급번호: 11-20250115-9864732

가입자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

가입자 성명	장윤희	생년월일	1974.02.14.	
사업장 명칭	대울주식회사	납부자번호	81369701862	

2024년 01월 ~ 2024년 12월 납부내역

(단위: 원)

1/1

	고지금액				납부금액			
월별	건강 보험료	장기요양 보험료	보수 외 소득월액 (건강)	보수 외 소득월액 (요양)	건강 보험료	장기요양 보험료	보수 외 소득월액 (건강)	보수 외 소득월액 (요양)
1월	14,180	1,830	0	0	14,180	1,830	0	0
2월	14,180	1,830	0	0	14,180	1,830	0	0
3월	14,180	1,830	0	0	14,180	1,830	0	0
4월	33,690	4,420	0	0	33,690	4,420	0	0
5월	33,670	4,350	0	0	33,670	4,350	0	0
6월	-17,780	-2,390	0	0	-17,780	-2,390	0	0
7월	0	0	0	0	0	0	0	0
8월	0	0	0	0	0	0	0	0
9월	0	0	0	0	0	0	0	0
10월	0	0	0	0	0	0	0	0
11월	0	0	0	0	0	0	0	0
12월	0	0	0	0	0	0	0	0
연말정산	0	0 0			0	0		
합계	92,120	11,870	0	0	92,120	11,870	0	0
납부	총액	35		103,990	용도	구분	납부획	학인용

위와 같이 보험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

2025년 01월 15일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림생인

- ※ <u>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납부의무자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77조에 따라 사업장의 사용자입니다. 따라서 사용자가 아닌</u> <u>직장가입자에게는 체납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습니다.</u>
- ※ 이 확인서는 상기 사용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, 다른 용도(재직·경력증명, 금융기관 제출, 소득 파악용 등)로 사용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공단에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- ※ 이 확인서는 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 또는 납부확인용의 경우 정부24(www.gov.kr)에서 직접 출력하실 수 있으며(공인 인증서 필요), '증명서발급사실확인' 메뉴 또는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 발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(발급일로부터 90일 까지). 단, 정부24에서 발급 받은 경우는 정부24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.
- ※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기준이며, 당일 보험료 정산, 자격변동신고, 납부취소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※ 종합소득세신고용 지역보험료 및 소득월액보험료 납부금액은 납부하신 연체금과 신용카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





발급번호: 11-20250115-9866636

가입자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

가입자 성명	장윤희	생년월일	1974.02.14.
사업장 명칭	대울주식회사	납부자번호	81429316783

2024년 01월 ~ 2024년 12월 납부내역

(단위: 원)

1/1

	고지금액				납부금액			
월별	건강 보험료	장기요양 보험료	보수 외 소득월액 (건강)	보수 외 소득월액 (요양)	건강 보험료	장기요양 보험료	보수 외 소득월액 (건강)	보수 외 소득월액 (요양)
1월	0	0	0	0	0	0	0	0
2월	0	0	0	0	0	0	0	0
3월	0	0	0	0	0	0	0	0
4월	0	0	0	0	0	0	0	0
5월	0	0	0	0	0	0	0	0
6월	0	0	0	0	0	0	0	0
7월	14,180	1,830	0	0	14,180	1,830	0	0
8월	14,180	1,830	0	0	14,180	1,830	0	0
9월	14,180	1,830	0	0	14,180	1,830	0	0
10월	14,180	1,830	0	0	14,180	1,830	0	0
11월	14,180	1,830	0	0	14,180	1,830	0	0
12월	14,180	1,830	0	0	14,180	1,830	0	0
연말정산	0	0 0			0	0 0		
합계	85,080	10,980	0	0	85,080	10,980	0	0
납부	총액	35		96,060	용도	구분	납부획	학인용

위와 같이 보험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

2025년 01월 15일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정의정인

- ※ <u>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납부의무자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77조에 따라 사업장의 사용자입니다. 따라서 사용자가 아닌</u> 직장가입자에게는 체납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습니다.
- ※ 이 확인서는 상기 사용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, 다른 용도(재직·경력증명, 금융기관 제출, 소득 파악용 등)로 사용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공단에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- ※ 이 확인서는 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 또는 납부확인용의 경우 정부24(www.gov.kr)에서 직접 출력하실 수 있으며(공인 인증서 필요), '증명서발급사실확인' 메뉴 또는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 발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(발급일로부터 90일 까지). 단, 정부24에서 발급 받은 경우는 정부24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.
- ※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기준이며, 당일 보험료 정산, 자격변동신고, 납부취소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※ 종합소득세신고용 지역보험료 및 소득월액보험료 납부금액은 납부하신 연체금과 신용카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

